

# 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4월 1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4월 1일

3. 개 정 이 유

충북체육고등학교가 충청북도 수영장과 동일부지안에 건축이 되었고 특히 충북수영장 2층에 충북체육고등학교 식당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동일구역 동일건축물내에 2개 기관이 있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청북도수영장의 場長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하려는 것임.

4. 주 요 골 자

충청북도수영장의 場長을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던 것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변경함.(안 제4조 제1항)

## 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 수영장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본 개정조례안은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충청북도 수영장과 동일 부지내에 건축됨에 따라 지방행정주사로 되어있는 충청북도 수영場長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첨